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51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이훈기 · 김문수 · 박지원
김승원 · 박해철 · 김남근
김 윤 · 이재관 · 이병진
이주희 · 황명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국가가 그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교관 등의 행위로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 또는 유족은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또한 현행법은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만을 그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는바, 중상해가 아닌 상해까지 구조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의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자의

행위도 구조대상 피해범죄에 포함하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타인”을 “타인(「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또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 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해 또는”을 “장해, 상해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었으나 그 손상의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제1항 중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을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상해구조금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장해구조금 및”을 “장해구조금·상해구조금 및”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장해구조금 또는”을 각각 “장해구조금·상해구조금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해구조금 또는”을 “장해구조금·상해구조금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장해구조금과”를 “장해구조금·상해구조금 및”으로, “범위”를 “범위(상해구조금의 경우는 24개월 이하의 범위)”로, “장해

또는”을 “장해·상해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
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① ----- ----- -----.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1. ----- <u>타인(「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또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4. ----- ----- ----- ----- ----- ----- ----- ----- ----- -----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6.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② (생 략)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

---장해, 상해 또는-----
-----.

5.·6. (현행과 같음)

7. “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었으나 그 손상의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상해구조금 및-----
-----.

② (현행과 같음)

③ 장해구조금·상해구조금 및-----
-----장해구조금·상해구조금 또는-----
-----장해구조금·상해구조금 또는-----

는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생략)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이나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이하 “유족구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22조(구조금액) ① (생략)

②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

----장해구조금·상해구조금 또는-----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구조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장해구조금·상해구조금 및-----

-----범위(상해구조금의 경우는 24개월 이하의 범위)-----장해·상해 또는-----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